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
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인영 (통일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 및 후견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596호, 2021. 12. 21. 공포, 2022. 6. 22. 시행)됨에 따라,

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,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보호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며, 통일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후견인 선임 청구 요청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무연고청소년 보호)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법인이 보호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선정 또는 변경 할 수 있다. 다만, 무연고청소년이 성년인 경우에는 보호자 선정·변경 여부에 대하여 무연고청소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
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가정
3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4. 제38조의2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이용을 지원하는 공동생활시설
5.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(「대안학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포함한다)

6. 국내에 거주하는 무연고청소년의 친족

7.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또는 법인

②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“그 밖에 보호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무연고청소년의 성별, 나이, 학력

2. 무연고청소년의 직업, 주거

3. 무연고청소년의 친족

4.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자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된 정착지원시설의 장에게 임시로 보호자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「민법」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해당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

2.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이사장

3. 그 밖에 무연고청소년의 후견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통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 「민법」 제932조에 따라 법원에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

청구할 수 있다.

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자의 선정 및 변경·해제,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의 필요여부 등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⑦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,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
제38조의2제1항 중 “법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 시 24세 이하인 보호대상자(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. 이하 “무연고청소년”이라 한다)와 법 제11조제1항”을 “법 제11조제1항”으로, “보호대상자 등”을 “보호대상자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연고청소년 등”으로 한다.

제46조제3항 중 “입학금·수업료 및 기성회비”를 “입학금, 수업료”로 한다.

제4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5(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

제4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남북 통합문화센터의 업무 중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지원,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화활동지원, 남북통합문화교육 및 시설 관리·운영 업무를 통일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5조의2(무연고청소년 보호) ①</u> <u>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법인이 보호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선정 또는 변경 할 수 있다. 다만, 무연고청소년이 성년인 경우에는 보호자 선정·변경 여부에 대하여 무연고청소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.</u> <u>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</u> <u>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가정</u> <u>3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</u> <u>4. 제38조의2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이용을 지원하는 공동생활시설</u> <u>5.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(「대안학교의 설립·운</u>

영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포함한다)

6. 국내에 거주하는 무연고청소년의 친족

7.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또는 법인

②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“그 밖에 보호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무연고청소년의 성별, 나이, 학력

2. 무연고청소년의 직업, 주거

3. 무연고청소년의 친족

4.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자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된 정착지원시설의 장에게 임시로 보호자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청

구를 요청하는 경우 「민법」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해당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

2.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이사장

3. 그 밖에 무연고청소년의 후견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통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 「민법」 제932조에 따라 법원에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.

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자의 선정 및 변경·해제,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의 필요여

제38조의2(공동생활시설의 이용 지원 등)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 시 24세 이하인 보호대상자(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. 이하 “무연고청소년”이라 한다)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거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보호대상자 등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제46조(교육지원의 기준) ①·② (생략)

부 등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⑦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,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
제38조의2(공동생활시설의 이용 지원 등) ① ----- 법 제11조제1항-----

----- 보호대상자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연고청소년 등-----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46조(교육지원의 기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국립·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·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면제한다.

④·⑤ (생략)

<신설>

제49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~ ⑤ (생략)

<신설>

③ -----

----- 입학금, 수업료 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48조의5(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

제49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 중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지원,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화활동지원, 남북통합문화교육 및 시설 관리·운영 업무를 통일부장관

	<u>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.</u>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통일부 정착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5923